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나936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울

담당변호사 윤현하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원진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1. 11.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가단51317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66,675,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후의 사정과 피고의 원물반환 관련 주장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안전화변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10행의 “말소되었다.” 다음에 “이후 H조합가 2020.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P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21. 6. 2.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져, 2021.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Q 앞으로 같은 일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H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일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인정근거】부분 중 “4호증”을 “4, 12, 1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마지막 행 및 6쪽 1행의 각 “채무가”를 각 “채권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1행의 “피담보채무는”을 “피담보채권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2행의 “채무로서”를 “채권으로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12행의 “갑 제8, 9호증”을 “갑 제8 내지 10호증”으로, 같은 쪽 20행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7쪽 9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7쪽 17행의 “종합하면,” 다음에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됨과 아울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H조합 명의의 근저당권과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J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액수로,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과 일치한다)’과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이 불필요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7쪽 20행의 “167,479,178원”부터 8쪽 3행의 “것이므로”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86,197,534원[=원금 147,500,000원 + 이에 대한 2019. 7. 4.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1. 9. 9.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8,697,534원{=147,500,000원×0.12×(2년+68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3. 추가 판단하는 부분[본안전항변(권리보호이익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거나 그 소유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하여 C에게 복귀될 예정인 이상, 이 사건 소는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하여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H조합가 2020.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P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21. 7. 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금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는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원고가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소의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C에게 복귀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소의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정세진, 판사 김지영

(별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기타재표지붕

면 적 : 제23층 호 113.7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 57682㎡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57682분의 75.567

끝.

